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
의 결 년 원 일	95. 8. 12 (제40회)

제출년월일 : 1995. 8. 4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종전까지는 부천시결산검사위원을 “3인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인이상 5인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 부천시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선임방법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제3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17호)이 1994년 7월 6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3인 이내로”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u>위원의 정수는 3인 이 내로 한다.</u>	제2조(위원의 정수) <u>3인 이 상 5인 이하로.....</u>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u>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 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u>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u>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 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을 가진 자를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년 8월 3일 제출(부천시장)
- 나. 회부일자 : 95년 8월 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95년 8월 3일)
- 라. 의결일자 : 95년 8월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안 제2조)
 - 직무상 사망 상해시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개정(안 제4조 제1항)

○ 직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금 수혜자가 장애 또는 사망했을시는 장애 및 사망보상금 지급 금액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감하고 지급(안 제4조 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의 개정에 합리되는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해	당	없	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만장일치

나. 반대 : 해당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의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
의 결	95. 8. 12
년 월 일	(제40회)

제출년월일 : 1995. 8. 3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관련조례를 개정